□ 변경 대비표

변경시행일 : 2018년 11월 30일

신한BNPP스마트KRX3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파생형]

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제2조 (용어의 정의)	신한BNPP스마트KRX300인덱스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파생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8. <생략> <신설>	신한BNPP스마트KRX3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파생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8. <생략> **9. " 모자형" 이라 함은 법 제233조 규정에 의한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신한BNPP스마트KRX300인덱스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파생형]"이라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5. <생략> <신설> ③ <생략> <신설>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신한BNPP스마트KRX3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파생형]"**이라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5. <현행과 같음> **6. 모자형**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신탁계약의 시행일 현재,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한BNPP스마트KRX3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제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제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 <생략> **<신설>** ②~③ <생략>	제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투자신탁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에 비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행사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제16조 (투자목적)	제16조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생략)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신한BNPP스마트KRX3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의 수익증권 2.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3. 법 시행령 제34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4.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제18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제18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생략)	제18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신한BNPP스마트KRX3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에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로 한다. 2.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모투자신탁에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초과로 한다. 3.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제19조 (운용 및 투자 제한)	제19조 (운용 및 투자 제한) (생략)	제19조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제20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제20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생략)	제20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제25조의 2(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청구)	**<신설>**	**제25조의2(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청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할 사유가 없는 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제26조의 2(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 청구)	**<신설>**	**제26조의2(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 청구)**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에 환매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이 투자신탁의 자금으로 환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날에 모투자신탁에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③ <생략> **④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③ <현행과 같음> **④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전원 및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제30조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제30조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30조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제35조 (상환금 등의 지급)	제35조 (상환금 등의 지급) 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생략>	제35조 (상환금 등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전원 및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현행과 같음>
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제37조 (수익자총회)	제37조 (수익자총회) **①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관련 법령 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신설>	제37조 (수익자 총회) **①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관련 법령 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⑩ 모투자신탁 수익자총회가 개최되어 그 수익자 총회의 목적이 자투자신탁 수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제43조 (신탁계약의 변경)	제43조 (신탁계약의 변경) ①~③ <생략> ④ 수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제43조 (신탁계약의 변경)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수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함)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2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3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 제1부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신한BNPP스마트KRX300인덱스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파생형] 제1부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신설>	신한BNPP스마트KRX3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파생형] 제1부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형(주식-파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신설>** **<신설>**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형(주식-파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신한BNPP스마트KRX3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 제2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제2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생략>** **<신설>**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1. 집합투자증권 투자비율 : 100% 이하- 신한BNPP스마트KRX3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의 수익증권 50% 초과 - 상기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2.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 10% 이하 법 시행령 제3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3.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 신한BNPP스마트KRX3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신설>**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모투자신탁 투자제한] 신한BNPP스마트KRX3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전략 인덱스 복제 포트폴리오(지수구성 복제) 또는 KRX300 선물, ETF 매수 등을 통해 시장지수(KRX300지수) 성과를 추종하면서 지수 수익률 추종이라는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알파포트폴리오 전략, 현,선물 차익거래 전략, 주식 이벤트 활용 전략 등을 일부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변동율과 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동율의 차이)는 100분의 10 이내로 통제합니다. ※ KRX300지수란? 한국거래소(KRX)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의 우량기업 300종목을 선정하여 구성한 지수 - 평가대상 : 에너지, 소재, 산업재, 자유소비재,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금융/부동산, 정보기술/통신서비스, 유틸리티 총 9개산업군별로 분류 - 종목선정 : 시장구분없이 산업군별로 누적시총 80%이내(또는 순위 상위 30%) 및 거래대금 상위 80% 이내 해당하는 종목을 우선 선정(* KRX 300 구성종목은 매년 2회(6월, 12월) 정기변경 예정) ※ 투자신탁 설정 초기에는 추가설정 및 환매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KOSPI200선물, ETF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인 신한BNPP스마트KRX3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에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계속)	(2) 상세 투자전략 -인덱스 복제 포트폴리오 <생략>	(2) 상세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인덱스 복제 포트폴리오(지수구성 복제) 또는 KRX300 선물, ETF 매수 등을 통해 시장지수(KRX300지수) 성과를 추종하면서 지수 수익률 추종이라는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알파포트폴리오 전략, 현,선물 차익거래 전략,주식 이벤트 활용 전략 등을 일부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변동율과 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동율의 차이)는 100분의 10 이내로 통제합니다. ※ KRX300지수란? 한국거래소(KRX)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의 우량기업 300종목을 선정하여 구성한 지수 - 평가대상 : 에너지, 소재, 산업재, 자유소비재,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금융/부동산, 정보기술/통신서비스, 유틸리티 총 9개산업군별로 분류 - 종목선정 : 시장구분없이 산업군별로 누적시총 80%이내(또는 순위 상위 30%) 및 거래대금 상위 80% 이내 해당하는 종목을 우선 선정(* KRX 300 구성종목은 매년 2회(6월, 12월) 정기변경 예정) ※ 투자신탁 설정 초기에는 추가설정 및 환매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KOSPI200선물, ETF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복제 포트폴리오 <현행과 같음>
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계속)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파생형)입니다. 따라서 주된 투자대상이자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 국내주식' 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파생형)입니다. 따라서 **이 모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이자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 국내주식' 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2.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18년 10월 31일)
3.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최근현황갱신 (기준일: 2018년 10월 31일)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2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 제1부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신한BNPP스마트KRX300인덱스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파생형] 제1부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 특징 :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형(주식-파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신설>**	신한BNPP스마트KRX3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파생형] 제1부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 특징 :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형(주식-파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 제2부 I.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제2부 I.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부 I.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 제2부 I. 투자전략 2. 투자전략	제2부 I. 투자전략 2. 투자전략 (1) 기본 운용전략 인덱스 복제 포트폴리오(지수구성 복제) 또는 KRX300 선물, ETF 매수 등을 통해 시장지수(KRX300지수) 성과를 추종하면서 지수 수익률 추종이라는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알파포트폴리오 전략, 현,선물 차익거래 전략, 주식 이벤트 활용 전략 등을 일부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변동율과 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동율의 차이)는 100분의 10 이내로 통제합니다. ※ KRX300지수란? 한국거래소(KRX)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의 우량기업 300종목을 선정하여 구성한 지수 - 평가대상 : 에너지, 소재, 산업재, 자유소비재,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금융/부동산, 정보기술/통신서비스, 유틸리티 총 9개산업군별로 분류 - 종목선정 : 시장구분없이 산업군별로 누적시총 80%이내(또는 순위 상위 30%) 및 거래대금 상위 80% 이내 해당하는 종목을 우선 선정(* KRX 300 구성종목은 매년 2회(6월, 12월) 정기변경 예정) **<신설>**	제2부 I. 투자전략 2. 투자전략 (1) 기본 운용전략 1)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인 신한BNPP스마트KRX3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에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2) 이 투자신탁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증권 등에 투자하여 해당 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을 추구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됩니다.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신한BNPP스마트KRX3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2.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제1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제1부 3.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제1부 3.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18년 10월 31일)